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운영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운영희, 강석주, 김경훈,
김원중, 김춘곤, 김형재,
김혜지, 박영한, 박환희,
송경택, 심미경, 유만희,
윤기섭, 이종태, 이효원,
최기찬, 최민규, 최호정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2002년 (재)서울여성으로 시작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등 서울시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정책의 전문 기관으로서 그간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서울을 선도하기 위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전환되어 왔음.
-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현행에 맞춰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을 ‘아동의 권리 보장,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’까지 확대하여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다. 시장의 재단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복지증진을 위하여”를 “복지증진, 아동의 권리 보장,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3.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
4.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·보급
5.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
6. 국내외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·교류 및 민간 협력
7.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여성·아동·가족·보

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

9.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16조 중 “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, 취·창업 역량강화, 사회참여활동 촉진, 복지증진”을 “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복지증진, 아동의 권리 보장,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관련 정책 연구·개발</u> 2. <u>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</u> 3. <u>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</u> 4. <u>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 5. <u>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 활동 강화사업</u> 6. <u>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</u> 	<p>제3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</u> 2. <u>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</u> 3. <u>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</u> 4. <u>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·보급</u> 5. <u>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</u> 6. <u>국내외 여성·아동·가족·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·교류 및</u>

7.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

연계 및 교류사업

8.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

관리

9.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

리

10.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

및 육성사업

11.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

운영 및 여성·가족·보육·

저출산, 아동·청소년정책의

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

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

탁하는 사업

12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

필요한 사업

제16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여성

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

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

고, 취·창업 역량강화, 사회참

여활동 촉진, 복지증진 사업을

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

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

수 있다

민간 협력

7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‘시장’이

라 한다)이 위탁하는 여성·아

동·가족·보육 분야 관련 시설

운영 및 관리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

는 사업 관련 국가·지방자치

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

위탁하는 사업

9.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

필요한 사업

제16조(업무의 위탁) ----- 여성·

아동·가족·보육 분야의 -----
